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당 가입 조회 요청에 대한 정당의 회신 의무 부여 >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58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당 가입 조회 요청에 대한 정당의 회신 의무 부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우재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3.
3. 회 부 일 : 2024.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운동이 금지되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도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특히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과거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수 임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인사위원의 경우도 정치활동을 하던 자들이 위촉되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사유로 정당 가입 조회 요청을 할 때 정당이 이에 응하게 하여 공무원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57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정당 가입 조회 요청에 대한 정당의 회신 의무 부여(안 제 36조)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사유로 정당 가입 조회 요청 시 정당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생략) <u><신설></u>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공무원법」 제8조의3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7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사유로 정당 가입 조회 요청을 할 경우, 정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및 지

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음.1)2)

그런데,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이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 등
에 임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외부 인사위원으로 위촉되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2)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겹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사유로 정당 가입 조회 요청 시 정당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³⁾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률로 정해진 사유가 아닌 경우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고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 가입 여부 누설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된 논의도

3) 「정당법」

제24조(당원명부) ①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는 개정안에 따른 개인의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인사혁신처장이나 임용권자가 정당에 대한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조를 요청받은 정당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대표발의, 2024. 12. 23., 의안번호 제6857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대표발의, 2024. 12. 23., 의안번호 제6854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안) 주요 내용 >

의안명	대상	현행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의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요청 시 협조 대상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행정기관·공공단체·정 당, 그 밖의 관련 기관
	협조 요청 시 따라야 하는 대상	요청받은 기관	요청받은 기관, 정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의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요청 시 협조 대상	신설	행정기관·공공단체·정 당, 그 밖의 관련 기관
	협조 요청 시 따라야 하는 대상	신설	요청받은 기관, 정당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공무원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당원명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확인·열람 등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24조 및 제56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 가입 여부 누설 및 용도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인사혁신처는 「정당법」이 당원명부의 열람 및 조사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정당가입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정당법」 개정과 함께 신원조사, 범죄경력조회 등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 규정⁴⁾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4) 「보안업무규정」 제36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